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2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4누5513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1. A
	2. B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4. 6. 17. 선고 2013구합29384 판결
변 론 종 결	2014. 12. 5.
판 결 선 고	2015. 1. 9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1. 21.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,415,200원 중 22,000,000원을 초과하는 부분, 지방교육세 6,241,520원 중 2,200,000원을 초과하는 부분, 농어촌특별세 3,120,760원 중 1,100,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22

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4면 제3행의 "사실" 다음에 "(원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그 소유형태가 공유인 점, 아파트상가로서 활성화되지 아니한 점 등 개별요인 반영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나,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)"를 추가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석조

판사 손삼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22

판사 김용하